

공 고 문

◆ 2018년 3분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실시 안내

인천광역시에서 2018년 3분기 유가보조금 지도·점검을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조합원님들서는 만전을 기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1. 1일 중 4회를 초과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2. 1시간 이내에 다시 충전(주유)하는 경우.(취소건도 포함)
3. 1회당 72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4.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1. 부제(휴무)일에 충전(주유)하는 행위.
2. 연료사용량보다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3. 운송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일을 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개인용무(지방출타, 가족여행, 나들이 등)로 인한 주유 시 지방충전소에서 충전하실 때 유가보조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및 현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실제 충전(주유)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해당차량 이외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행정처분사항]

위반 횟수	처분 내용
1차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1년 보조금 지급정지

※ 보조금 지급정지와 함께 부정 수급된 유가보조금은 전액 환수 조치 됨.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